`

직불카드 회원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직불카드 회원약관(구하나은행)	직불카드 회원약관	구.행명 삭제
제 1 조(회원) ~ 제 10 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내용생략)	제 1 조(회원) ~ 제 10 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좌 동)	
제 11조 (카드의 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의 오입력 횟수 초과 2. 이용한도 초과 3. 사고신고 계좌 4. 법적 제한 계좌 5. 지급가능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6. 당일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7.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8.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11조 (카드의 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의 오입력 횟수 초과 2. 이용한도 초과 3. 사고신고 계좌 4. 법적 제한 계좌 5. 지급가능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6. 당일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7.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삭 제)	항목삭제 (상위약관(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관계법령과 중복)
제 12 조(카드의 분실 도난) ~ 제 15 조(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내용생략)	제 12 조(카드의 분실 도난) ~ 제 15 조(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내용생략)	
제 16 조(약관변경 승인 등)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 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에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② ~ ③ (내용 동일)	제 16 조(약관변경 승인 등)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 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에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 등 전자적 장치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② ~ ③ (좌동) ④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객에 불리한 조항 통지 수단 확대 항추가
제 17 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17 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구.행명 삭제, 준용약관 추가
제 18 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 제 19 조(관할법원) (내용생략)	제 18 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 제 19 조(관할법원) (내용생략)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